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38

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:성일종·김태호·인요한

고동진 • 박덕흠 • 최보윤

김상욱 • 서지영 • 송석준

윤상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·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나 이 시기에 그 배우자도 곁에서 가사일을 도우며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배우자에게도 이 시기 중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1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경우에는 20일)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240호),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23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6항제5호 중 "제74조제7항"을 "제74조제9항"으로 한다.

제7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본문 중 "제1항부터 제3항"을 "제1항부터 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8항)중 "제7항"을 "제9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0항)중 "제7항"을 "제9항"으로, "제9항"을 "제11항"으로 한다.

-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)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·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공 임신중절 수술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)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0조제1호 중 "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"를 "제74조제1항·제2항 ·제3항·제4항·제6항 및 제7항"으로 한다. 제114조제1호 중 "제74조제6항"을 "제74조제8항"으로 한다.

제116조제2항제2호 중 "제74조제7항·제9항"을 "제74조제9항·제11항"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~ ⑤	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	6
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	
으로 본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제74조제7항</u> 에 따른 임신기	5. <u>제74조제9항</u>
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	
축된 근로시간	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・②	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	③
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	
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・사	
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. <u>다만,</u>	<u><단</u>
인공 임신중절 수술(「모자보	<u>서 삭제></u>
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	
우는 제외한다)에 따른 유산의	
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<u><신 설></u>	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

<신 설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 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은 유급으로한다. 다만, 「남녀고용평등과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책임을 면한다.

<u>⑤</u> ~ <u>⑦</u> (생 략)

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
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
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15일(한 번에 둘 이상의
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
에는 20일)의 범위에서 배우자
유산·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
<u>다.</u>
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
고 인공 임신중절 수술(「모자
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
경우는 제외한다)에 따른 유산
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<u>다.</u>
<u>⑥</u> 제1항부터 제4항
<u>.</u>
(7) ~ (9) (현행 제5항부터 제7

항까지와 같음)

- 8 사용자는 <u>제7항</u>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⑨ (생략)
- ①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,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0조, 제22조제1항, 제26 조, 제50조, 제51조의2제2항, 제52조제2항제1호, 제53조제1항·제2항, 같은 조 제3항 본문·제7항, 제54조, 제55조, 제59조제2항, 제60조제1항·제2항·제4항 및 제5항, 제64조제1항, 제69조, 제70조제1항·제2항, 제71조, <u>제74조제1항</u>부터 제5항까지, 제75조,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, 제82조,

<u> ⑩</u> <u>제9항</u>	
<u>(1)</u> (현행 제9항과 같음)	
① 제9항	
	· <u>세11양</u>
· 제110조(벌칙)	
1	
<u>제74조제1</u>	
<u> 2항 • 제3항 • 제4항 • 제</u>	
<u>제7항</u>	

제83조 및	제104조제2항을	위
반한 자		

2. (생략)

- 제11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6조, 제16조, 제17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제2항, 제47조, 제53조제4항 단서, 제67조제1항·제3항, 제70조제3항, 제73조, 제74조제6항, 제77조, 제94조, 제95조,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
 - 2. (생략)

제11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14조, 제39조, 제41조, 제4 2조, 제48조, 제66조, <u>제74조</u> <u>제7항ㆍ제9항</u>, 제76조의3제2 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, 제 91조, 제93조,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

 2. (현행과 같음) 제114조(벌칙)
1
<u>제74조제8항</u>
2. (현행과 같음) 제11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2
 1. (현행과 같음) 2
<u>제74</u> 조제9항·제11항

3.・4. (생 략)	3.・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